

부속서 8-마-1

한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p>1) 2) 3) 총포, 도검 또는 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분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3) 조지아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p> <p>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 및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1 2}</p> <p>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³</p> <p>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 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p>	<p>1) 2) 사업 서비스에 대하여, 통제되는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 지점의 토지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음.</p>

¹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²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함.

³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유보는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음.</p>	<p>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제한될 수 있음.</p> <p>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4)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p> <p>A. 기업 내 전근자(ICT)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인 자연인.</p> <p>(i)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제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p> <p>(ii)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p>	<p>4)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계약 서비스 공급자(CSS)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p> <p>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른 거주자로 제한될 수 있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p> <p>(iii)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자.</p> <p>A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이 위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p>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함.

- i)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 ii)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조지아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 iii)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 하나, 또는 파트너십,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실체 각각의 총 투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함.

	<p>B. 상용 방문자(BV) A(i) 또는 A(ii) 범주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으로서, 조지아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이며,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고 그 자연인은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음.</p> <p>C. 서비스 판매자(SS)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가 일반 공중에 대하</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연인이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p> <p>B와 C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p> <p>D.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 법인의 피고용인</p> <p>다음의 조건과 분야별 구체적 파트에 언급된 모든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 한국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⁴</p> <p>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함.</p> <p>입국하려는 자연인은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어야 할 것임.</p> <p>그 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그리고 위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 및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 및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p> <p>그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p>		

⁴ “D” 유형에 따라 이루어진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이 장에 따라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받지 않도록 요구됨.</p> <p>약속은 특정 하위 분야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 제한(적용 양식 및 수준은 추후 결정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p> <p>계약은 한국의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 분야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지아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법 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p>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p>D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됨.</p>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관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p>1. <u>사업 서비스</u></p> <p>A. <u>전문적 서비스</u></p> <p>a. 법률 서비스 (CPC 861*)</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로서 자격을 보유한 관할 법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p> <p>(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p> <p>(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p> <p>(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나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현지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그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i)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p> <p>(ii)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 주석						
다음 정보는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p>i)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p> <p>ii)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함.</p> <p>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p> <p>iv)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조지아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조지아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조지아가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p> <p>v)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협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p>1)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 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p> <p>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p>	<p>1) 2) 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 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 전수 및 정보 교환 <p>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 (CPC 863)	<p>1)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2)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의 세무사만 세무조정서비스 공급이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상업적 주재 ⁵ 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4)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한 외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통과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⁵ 상업적 주재는 법인일 필요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u>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연구개발 서비스</u>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부동산 서비스</u>	<p>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p> <p>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p> <p>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p>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u>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⁶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 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⁷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⁷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⁸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기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를 제외한 임 업 및 별목 부수 서비스 (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씩 총납입자본금이 가산됨.

l. 조사 및 경비 서비스 (CPC 87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됨. (a) 시설경비 (b) 호송경비 (c) 신변보호 (d) 기계경비, 그리고 (e) 특수경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 밀 조사 서비스 (CPC 86752)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 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출판 (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신문 및 경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⁹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p> <p>B. 쿠리어 서비스</p> <p>특급배달 서비스¹⁰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p> <p>「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¹¹를 가지는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함.¹²</p> <p>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p> <p>이 약속은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p> <p>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기를 보유한 쿠리어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p>	<p>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¹⁰ “특급배달 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b)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부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¹²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 쿠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않은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레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무선휴출 서비스 PCS(개인통신 서비스)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 접속 서비스) PSTN(공중교환 전화망) 과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 서비스	<p>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p> <p>2) 제한 없음.</p> <p>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됨.</p> <p>외국정부나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¹³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음.</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¹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통신서비스 WTO 참조문서에 포함된 대로

서류, c) 외국 자본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¹³ “의제외국인” 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퍼센트(그 최대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라면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¹⁴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 포함)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 서비스¹⁵</u>	<p>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¹⁶</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됨. ¹⁷
D. <u>시청각 서비스</u>	<p>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¹⁵ “부가 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함.

¹⁶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¹⁷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레스, 팩시밀리 서비스 그리고 전용회선의 단순 재판매는 제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 서비스 ¹⁸ A. <u>위탁 중개인 서비스</u>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⁸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 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도매 서비스</u>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62229 중 인삼, 홍삼 및 곡분 도매업, 그리고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p>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소매 서비스</u>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63108, 쌀, 인삼 및 홍삼 제외), 632]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p> <p>주요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를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p> <p>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p> <p>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p> <p>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 유소 사업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프랜차이징</u> (CPC 8929*) ¹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¹⁹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5. 교육 서비스²⁰</p> <p>C. <u>고등교육 서비스</u>²¹ (CPC 923*)</p> <p>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p> <p>다음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중등 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p>1) 약속 안함.</p> <p>2)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p> <p>3)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²²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이 불필요).</p> <p>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p> <p>기술대학과 사내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²³에서 제한될 수 있음.</p> <p>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됨.</p> <p>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²⁰ 모든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의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의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²¹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²² “학교법인” 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²³ “수도권 지역” 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산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지역²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첨부 1(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라
 - (a)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또는
 - (b)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경영자, 연합체 또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시설

²⁴ “수도권 지역” 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성인교육 서비스²⁵</u> (CPC 924*) 사립 성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p>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허용됨.</p> <p>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음.</p> <p>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에 거주해야 함.</p>	

²⁵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2(성인교육 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p>1. 학원(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운송 및 안전 관리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경영,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및 피아노 조율 (c)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데이터 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d) 간호 조무: 간호 조무 (e)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상품 및 관광 (f)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팬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g) 국제: 성인 대상 외국어, 통역 및 번역 (h) 인문사회: 대학 편입, 공공 경영, 사업 경영, 회계, 통계 및 공무원 시험 (i)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 기예와 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실용음악, 바둑 및 웅변 <p>2.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교육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임.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언론기관, 그리고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을 지칭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다음 분야별 약속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내의 서비스를 제외한 CPC 9403 및 CPC 9406에 따른 서비스에 관련하여,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 제8.3조의 의무는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적용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5의 의무는 그러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음.

A. <u>폐수 서비스</u>	<p>산업 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PC 9401*)</p> <p>비산업 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PC 9401*)</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중앙 또는 지방 차원에서의 동 서비스 공급은 공공 독점 또는, 예를 들어 양허계약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p> <p>공공 당국은 다음의 가능성을 보유함. (a) 배타적 권리의 적용 (b) 서비스 관리계약의 자유로운 선택 (c) (공개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의 선택, 그리고 (d) 하나의 관리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예를 들어, 양허계약 종료시 공공 독점으로의 복귀)</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²⁶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배기ガ스 정화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²⁷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토양 및 지하수 정화 (CPC 940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⁶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²⁷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환경 컨설팅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7. 금융서비스</u>						
두주: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 ²⁸						
(2)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4)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5)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6) 한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조지아의 영역에 소재하는 조지아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한국에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임. 한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한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함.						
(7) 한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조지아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조지아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의 영역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그러한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할 것임.						
(8)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²⁸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10)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11)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이 장의 적용을 받으나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함. ²⁹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³⁰			
(12) 한국은			
(a) 다음 금융서비스 공급자(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 수산업협동조합			
(b)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더 큰 규모의 자본 대비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13)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한국은, 한국의 자연인 또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이 이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할 때, 외국 영역에서 그 자연인 또는 그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			
(15)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원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한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²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에 명시된 실체와 관련하여 한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음.

³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 항의 목적상,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않음. 위의 두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이 장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6) 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함. 다만, 한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b)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한국 영역 내에 설립되고 한국 법에 따라 규제되고 감독되는 조지아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함.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³¹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	--	--	--

³¹ “컨설팅” 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함.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중개서비스</p> <p>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p> <p>(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p> <p>(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p> <p>(b) 재보험 및 재재보험</p> <p>(c)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p> <p>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음.</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 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p> <p>3)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투명성을 위하여,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 수와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이</p>	<p>중개서비스</p> <p>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p> <p>(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p> <p>(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p> <p>(b) 재보험 및 재재보험</p> <p>(c)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p> <p>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음.</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 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제한될 것이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 될 수 있는 보험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것임.</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³² 그리고</p> <p>(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p> <p>2)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한국의</p>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p> <p>(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p> <p>2)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한국의</p>	

³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 언급되는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거주자,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p>3) 다음 종류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신용협동조합 (b) 상호저축은행 (c) 여신전문금융회사 (d) 종합금융회사 (e)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f) 신용정보회사 (g) 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h)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i) 채권평가회사 <p>한국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현지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p> <p>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됨.</p> <p>한국거래소 및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그 밖의 대체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시장을 운용할 수 있음.</p> <p>한국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한국의 증권</p>	<p>거주자,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p>3)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³³”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음.</p> <p>특명성을 목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함. (b) 자연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c)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그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함.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지법인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p>	

³³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회사 계정 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p> <p>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로 하지 않음.</p>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한국 지점은 운영자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됨.</p> <p>「은행법」 및 「증권거래법」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됨.</p> <p>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u>호텔 및 레스토랑</u>	1)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641, 6431*)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음식 제공 서비스 (CPC 642)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u> 여행 알선 서비스 및 여행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관광객 안내 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CPC 96491 다만, CPC 96191, 96192 및 해변 서비스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운송 서비스				
A. <u>해상운송 서비스</u> ³⁴ 국제 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은 제외함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 상에 명시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³⁴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참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주식회사만이 허용됨.</p> <p>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p> <p>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않음.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u>해운 부수 서비스</u>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 ³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 ³⁶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⁵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³⁶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³⁷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 ³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³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⁷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³⁸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 중개 서비스 또는 선박의 용대선, 대여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³⁹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항공 운송 서비스 ⁴⁰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⁴⁰ 제8.1조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항공기 유지 및 보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⁴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⁴²				

⁴¹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⁴²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u>도로 운송 서비스</u>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도로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7의 일부, CPC611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석유제품 운송에만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u>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u>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 (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그 밖의 운송 서비스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 ⁴³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그 밖의 서비스 b. 머리 미용 및 그 밖의 미장 서비스 (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⁴³ “철도 화물 주선” 이란 철로 운송의 끝지점에서 수행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의 체결, 화물 하역 및 배달과 같은 부수 서비스를 말함.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 국제해운, 3.b)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상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 · 검량 · 감정 서비스

- 검수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 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과 관련된 검증, 검사 및 조사로 구성된 활동